

휴면예금 활용범위에 관한 한국과 일본의 비교 : SDGs 관점을 중심으로*

네모토 마사쓰구** 충북대학교

정태일*** 충북대학교

논문 요약

한국은 IMF 경제위기와 신용카드 사태로 인해 신용불량자의 경제적 회생이라는 과제를 가지게 되었다. 휴면예금활용에 관한 제도는 한국이 2016년 일본보다 10년이나 앞서 2007년에 도입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휴면예금활용에 대한 비교분석을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관점에서 비교 검토하고자 한다. 한국의 휴면예금활용은 저소득층의 개인대상 신용대출 위주로 진행되는 반면에 일본은 민간공익활동단체 조성 위주로 진행하고 있다. 휴면예금활용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사례에 따르면, 취약계층을 포함한 지역주민을 위해 공익적 활동을 전개하는 단체에 대해 지원하는 일본의 휴면예금활용 방안은 개인대상 신용대출 및 일부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 등 대상의 대출사업 위주로 휴면예금을 활용하고 있는 한국에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 휴면예금, 지속가능발전목표, 취약계층, 사회적 지원, 사회적 기업

*이 논문은 2015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5S1 A5B8046954).

** 제1저자 *** 교신저자

I. 서론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시중은행 계좌에 휴면상태로 있는 잔액은 1,800여억 원에 달하고 있다.¹⁾ 한국정부는 휴면예금 등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고 관리하기 위해 2007년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휴면예금재단법’이라고 한다)’을 제정해 휴면예금관리재단을 설립하고, 일부 금융회사로부터 휴면예금 등을 출연받아 이를 재원으로 서민금융 및 복지사업을 지원해 왔다. 금융기관이 휴면예금관리재단인 미소금융중앙재단에 출연한 금액을 추산해 보면,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은행 및 저축은행 등 예금수취기관의 경우에 약 4,565억 원, 생명보험사 및 손해보험사 등 보험권의 경우에 5,728억 원 등 총 1조 293억 원에 달하고 있다. 한편, 휴면예금재단법은 2016년에 서민금융생활지원법으로 확대 개편되어 한국의 휴면예금 관련법의 성격이 휴면예금 관리보다는 서민금융지원이라는 명확성을 띠게 되었다 (이순호·이재연 2017, 82-83).

휴면예금의 활용에 대한 관심은 휴면금융재산관리에 관한 것과 소액대출에 관한 것으로 구분되어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특히, 휴면예금을 원천으로 하는 소액대출은 처음부터 수행기관과 지원대상자의 도덕적 해이가 우려되었다. 해외사례를 보면, 영국과 일본 등의 경우에 신용대출에 국한하지 않고 공익단체에 대한 조성금, 기금 등 형태로 휴면예금을 활용함으로써 국민 일반에게까지 혜택을 부여되도록 설계된 측면이 강하였다. 이는 휴면예금이 개인대상을 중심으로 하는 신용대출을 활용하는 한국과는 달리 비교연구가 필요한 부분으로 국내에서는 거의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매우 유의미한 영역이기도 하다.

국제사회에서 저소득과 빈곤문제는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인권, 환경, 사회적 요인 등과도 관련됨을 2015년 국제연합(UN)에서 합의된 SDGs

1)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1011_0000440210&clID=10401&pID=10400
(검색일: 2020/02/20).

(지속가능발전목표)에서도 확인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휴면예금활용은 현행 개인대상의 신용대출이 저소득, 빈곤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실제로 영국, 일본 등 사례는 개인대상의 신용대출이 아닌 방향으로, SDGs 맥락과 같이 하는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참여,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지원 등의 방향에서 추진되고 있다. 한국의 휴면예금활용은 저소득층의 개인 신용대출 위주로 설계, 운영되고 있음에 비해 영국, 일본 등은 공익활동 민간단체 조성금, 기금 등 위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의 휴면예금활용이 일본보다 약 10년이나 앞서 도입되었지만 일본의 휴면예금활용이 선진사례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인식이 발생한 원인 등을 알아보고자 한국과 일본의 휴면예금활용 사례를 비교 분석할 것이다. 특히 SDGs 관점에서 보면, 빈곤문제에 대해서는 경제적 대처 외에도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고, 영국과 일본의 휴면예금활용은 그러한 접근법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면 한국의 경우는 어떠한 이유로 저소득층의 개인 신용대출 위주로 설계되었는지, SDGs 관점을 바탕으로 한국과 일본 사례를 비교함으로써 그 이유를 도출함은 물론 나아가 한국의 휴면예금활용에 대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휴면예금활용에 대한 선행연구의 검토와 SDGs 논점

1. 선행연구의 검토

휴면예금활용에 대한 기존 연구는 국내외에서 다양한 차원에서 논의되었다. 휴면예금활용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는 휴면금융재산 관리에 관한 것과 소액대출에 관한 것으로 구분해 살펴볼 수 있는데, 그 배경은 한국에서의 휴면예금이 당초 휴면예금관리재단에 의해 관리되었고, 현재까지 휴면예금의 대부분이 신용대출사업에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휴면예금재산 관리에 관한 초기 연구로서 이재연(2005)은 정치권과 금융권 모두 휴면예금을 공익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점에

서는 일치하나, 정치권은 정부가 기금의 운영주체가 되는 사회기금화를, 금융권에서는 금융사가 운영주체가 되는 공익재단설립을 각각 주장하고 있는 상황을 파악하였고, 나아가 정치권에서 고려하고 있는 휴면예금의 사회기금화는 기존 정부출자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여타 정부기금의 성격 및 비효율적 운용을 고려할 때 원금의 손실 가능성이 높고 고객의 재산권 침해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지원금과 달리 상업성에 입각해 제공되는 마이크로크레딧(Microcredit)을 도입함으로써 자금지원 연속성이 보장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어 정찬우(2007)는 저소득층 복지사업을 위한 유상 신용공여 수행을 휴면예금 관리운영의 기본방향으로 제시하였다. 그런데 이순호·이재연(2017)은 2012년 대법원이 은행, 저축은행의 일부 휴면예금계좌에 대해 소멸시효가 끝나지 않고 중단된 것으로 판정하였음에 따라 현재 서민금융생활지원법(과거 휴면예금재단법)에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012년 대법원 결정으로 더 이상 휴면예금재단에 휴면예금을 출연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이 휴면예금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데 따른 비용이 계속 발생하고 효율적인 휴면예금 반환이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장기비활동 계좌인 휴면예금을 관리하는 법안을 별도로 제정할 필요가 있으며, 더 나아가 모든 상거래를 포괄하는 미청구 자산관리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소액대출에 관한 것으로 백경순(2012)은 마이크로크레딧 제도를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곤란한 저소득 취약계층의 자립지원을 위해 소액의 사업자금을 대여해 주고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하였고, 낮은 이자율, 무담보, 무보증 조건 등을 취약계층에 대한 마이크로크레딧 제도의 부가적인 배려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국내 마이크로크레딧 제도는 대상자에 중점을 두고 저소득층의 자립지원을 위한 근로연계 복지정책 측면에서 접근하는 경향이 짙고, 이에 따라 장기, 저리, 무담보 등을 통한 대상자에 대한 시혜적 배려가 강하지만, 상환율이 낮고, 연체율이 높은 등 수행기관과 지원대상자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를 지적하였다. 조은목(2014) 또한 서민금융제도에서 대손율이 높고 재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향적 운영에 경사되며 향후 지속가능하지 못해 일시적 이벤트로 그칠 경우 이를 이용하던 많은 서민층의 박탈감이 상당히 클 것으로 우려하였다. 한편 이정문(2019)은 사회적 금융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연구에서 개인 대상이기 보다는 사회적 가치창출기업의 자금조달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 투자자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직접금융 시장의 확대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상과 같은 선행연구 결과는 취약계층 대상 소액대출의 어려움이 있는 한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원을 추진하는 사회적 기업 등²⁾에 대한 자금조달 활성화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휴면예금활용에 대한 외국의 논의를 보면, 일본의 경우에는 2019년에 관련 제도가 도입되어 선행연구를 찾기가 어렵지만 일본이 벤치마킹한 영국 휴면자산위원회(Commission on Dormant Assets 2017)는 ‘휴면자산에 대한 도전: 투자가 및 사회이익을 위한 제언’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영국은 2008년에 휴면예금제도가 도입되어 휴면자산에 대한 전략적 관리가 시작되었다. 영국에서는 약 10억 파운드의 휴면계좌가 확인되어 그 중 3억 6,000만 파운드 이상이 영국 내에서 활용되고 있다. 성공적 사례로서 지역 내 고독과 고립을 감소시키는 우스터셔주 Age UK에 의한 Reconnections(재접속) 프로그램,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는 젊은 층에게 교육, 훈련, 고용기회를 제공하는 런던 Think Forward 등이 있다. 또한 요크셔 Harrogate Skills 4 리빙센터, 학습장애가 있는 90명 성인을 위해 성인학습과정을 제공하는 거주 시설, 웨일스 3SC 자본화 프로그램, 학습장애 젊은이를 지원하는 사회적 임팩트 기금, 케임브리지셔주의 Harry Specters, 자폐증 젊은이 일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항은 사회적 기업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로 정의하고 있다. 뒤에서 논의되는 SDGs 관점에서도 사회적기업 활동을 포함한 사회적 지원에 대한 중요성이 재인식되고 있다.

자리를 창출하는 초콜릿 제조 사회적 기업 등이 있다.

한국은 휴면예금을 취약계층 개인에 대해 활용하고 있는 데 비해 영국은 개인대상이라기 보다는 취약계층에게 서비스, 고용을 제공하는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차이가 부각된다. 이와 유사한 논리로 네모토 마사쓰구(根本 眞嗣 2014)는 재난 이재민 개인에게 직접 전달되는 의연금과 피해지역에서 이재민 지원활동을 하는 조직·단체에게 전달되는 지원금의 차이를 제시함으로써 그간 전자의 중요성이 당연시되어 온 데 비해 최근 후자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즉,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는 개인에게 현금을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에 못지않게 취약한 상황에서 개개인을 돕는 활동을 전개하는 단체에게 현금을 전달하는 것 또한 중요하고 그 활동이 개개인에게 개인적 차원에서는 획득하기 어려운 다양한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2. 휴면예금활용에 대한 SDGs 논점

2015년 국제연합의 회원국들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³⁾에 합의하였다.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현 세대와 미래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개념이다. SDGs를 형성하는 과정은 기존의 ‘새천년개발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⁴⁾와 달리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게(Leave No One Behind)’라는 슬로건에 상징되는 것처럼 개별 국가들의 시민사회, 기업, 연구소 등 다양

-
- 3)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MDGs의 한계에 따른 반성에서 시작된 것으로 빈곤 퇴치, 기아해소와 식량안보, 보건증진, 교육보장과 평생학습, 성평등과 여성역량강화, 불평등해소, 평화로운 사회와 제도, 에너지, 기후변화대응, 해양자원, 육상생태계, 물과 위생, 도시,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증진, 경제성장과 일자리, 인프라와 산업화, 이행수단과 글로벌 파트너십 등 17개 목표를 설정하였다.
 - 4) 새천년개발목표(MDGs)는 2000년 9월 국제연합 제55차 정기총회에서 189개 회원국이 채택한 밀레니엄선언으로 절대빈곤과 기아퇴치,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남녀평등 및 여성권익 향상, 아동사망률 감소, 모자보건 향상, 각종 질병 퇴치, 지속가능한 환경보전, 개발을 위한 범지구적 파트너십 구축 등 8개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2015년까지 실천하겠다는 것이다.

한 집단의 사람들이 그 형성과정에 참여할 수 있었고 그들이 제시한 의견들이 실제로 SDGs 내용과 형식을 구성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 또한 과거 MDGs가 빈곤을 개도국 문제로 한정하였음에 비해 SDGs는 선진국에서도 빈곤문제가 있음을 인식하였다. 그리고 과거 MDGs가 경제발전이 빈곤을 해결한다고 인식하였던 데 비해 SDGs는 인권, 환경 등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목표의 중요성이 재인식되었다. 실제로 SDGs의 17개 목표는 ‘사회발전’, ‘경제성장’, ‘환경보존’ 세 가지 축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현재까지 SDGs 관점에서 휴면예금활용을 분석한 선행연구는 찾기 어려우나, SDGs에 상정되는 세계적 인식 변화 추세를 휴면예금활용에도 원용하면 다음과 같은 지적이 가능할 것이다.

첫째, 휴면예금의 원천은 현지 거주 외국인을 포함한 국민 일반인만큼, 휴면예금활용에 대해 다양한 집단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체계가 요구된다. 이는 SDGs가 강조하는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실질적 의사결정구조 참여여부와 사회적 합의의 내실 여하를 의미한다.

둘째, 휴면예금활용 대상을 취약계층에 한정하는 당위성이다. 휴면예금 원천은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계층에 귀착되기 때문에 그 활용 대상 또한 일부 계층에게 한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당위성이 있는지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는 SDGs가 빈곤문제를 일부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각자 본인 문제로 받아들여야 함과 맥을 같이한다. 이러한 접근 방법은 제한적 문제 해결 방식이 아니라 광범위한 문제 해결로 확대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湯淺誠 2019, 1-33).

셋째, 신용대출이라는 방법에 대한 재고이다. 한국에서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002년 신용카드 사태를 거치면서 신용불량자가 급증해 정부는 신용불량자 신용회복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도하였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휴면예금을 저소득층 지원 및 신용불량자의 경제적 회생을 위해 활용하기로 하였다(이순호·이재연 2017, 81)는 배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현재 여전히 개인 대상 신용대출 위주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다시 논의할 여지가 없지 않다. 이미 선행연구에서 도덕적 해이가 지적된 바 있고(정찬우 2007), 영국 사례만 살펴보더라도 공

익적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휴면예금 활용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을 감안할 수 있을 것이다.

III. SDGs의 관점에서 한국과 일본의 휴면예금활용에 대한 비교

이미 언급한 것처럼 한국은 일본보다 일찍 2007년에 휴면예금법을 제정하였다. 그 후 일본에서는 2016년 휴면예금활용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휴면예금활용은 한국에서는 저소득층의 개인대상 신용대출 위주로, 일본에서는 공익단체조성(보조금) 위주로 진행되고 있어 각각 구체적 내용에 대해 비교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 일본의 휴면예금에 대한 비교 항목은 크게 법률 규정과 운영 기관의 두 가지로 하되 세부적으로는 근거 법과 그 제정 시기, 총괄 조직, 주요 대상자, 주요 대상 사업, 조직적 특징 및 현재 지적받고 있는 문제점과 SDGs 관점으로 살펴보고자 한다.⁵⁾

1. 한국의 휴면예금활용

한국의 휴면예금활용은 법률규정과 운영기관을 통해 알아보려 한다. 먼저, 휴면예금과 관련된 법률규정을 살펴보면, ‘휴면예금’이란 금융기관의 예금 등 중에서 관련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채권 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 등을 말한다(‘휴면예금 이체에 관한 특별법’, §2③). 휴면예금은 예금과 보험금으로 구성되는데, 예금은 무거래 5년으로 소멸 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찾아가지 않은 예금을 말하고, 보험금은 청구권 3년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도 찾아가지 않은 해지(실효)환급금, 만기보험금, 계약자 배당금 등을 말한다(서민금융진흥원, <https://www.kinfa.or.kr>).

한편 금융기관은 휴면예금을 휴면예금관리재단(이하, ‘재단’)이라고 한

5) 단, 일본에서는 휴면예금활용 관련 제도가 2019년에 시작된 관계 상 실제 활용 사례에 대한 분석은 다소 기간을 둔 후에 가능할 것이 있다.

다)에 출연할 수 있다(휴면예금재단법, §21①). 재단의 목적은 휴면예금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 및 운용 등을 수행함으로써 예금자 보호, 서민생활의 안정 및 복지 향상 등을 도모하고 경제·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휴면예금재단법, §1①)에 있다. 그 재단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첫째, 휴면예금의 관리 및 운용, 둘째, 휴면예금 원권리자에 대한 휴면예금에 갈음하는 금액의 지급, 셋째, 복지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감독(휴면예금재단법, §7)을 하는데, 휴면예금활용에 관해서는 셋째 복지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감독이 이에 해당된다.

휴면예금재단법은 복지사업자를 저소득층 복지사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으며(동법, §2⑥), 저소득층 복지사업 등을 가) 저소득층의 창업 또는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대출사업, 나) 금융채무불이행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대출사업, 다) 저소득층의 보험계약 체결 및 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 라. 그 밖에 서민생활의 안정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저소득층 복지사업 등)⁶⁾으로 정의하고 있다(동법, §2⑤). 나아가 동법 시행령 (§3)은 휴면예금재단법 제2조 제5항 대통령령 내용으로 첫째, 저소득층의 교육비를 지원하기 위한 신용대출사업, 둘째, 저소득층의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한 신용대출사업, 셋째, 그 밖에 서민생활의 안정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등 재단의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으로 유형화 되었다.

이를 종합하면 휴면예금재단법에 따른 휴면예금 활용은 저소득층 창업 및 취업 지원을 위한 신용대출, 금융채무불이행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대출, 저소득층의 보험계약 체결 및 유지 지원, 저소득층의 교육비 및 의료비 지원을 위한 신용대출사업 등으로 대부분 저소득층 대상 신용대출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다음으로 운영기관에 관해 살펴보면, 휴면예금재단법에 따라 2008년

6) 휴면예금재단법에 '서민'이라는 용어가 두 곳에 등장하나 '서민'에 대한 정의는 되어 있지 않다. 한편 동법 시행령에서는 '서민생활의 안정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서 '저소득층 복지사업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서민'을 '저소득층'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추론된다.

소액서민금융재단이 출범한 후, 2016년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서민금융법’이라고 한다) 제정과 시행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고 한다)이 출범하였다. 서민금융법의 목적은 서민금융진흥원 및 신용회복위원회를 설립해 서민7)의 금융생활과 개인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지원함으로써 서민생활의 안정과 경제·사회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서민금융법, §1)에 있다.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은 가) 저소득층의 창업, 취업, 주거, 의료 및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대출사업, 나)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대출사업, 다) 저소득층의 보험계약 체결 및 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 라) 저소득층의 원활한 금융생활 지원을 위한 종합상담 및 금융상품 등의 소개 사업, 마) 그 밖에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서민금융법, §2⑤).

서민금융법은 서민금융생활 지원사업으로 첫째, 영세한 개인사업자의 영업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대출사업, 둘째,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대출사업, 셋째, 그 밖에 저소득층 지원 및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해 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진흥원의 정관8)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다(서민금융법, §3).

이를 종합하면 서민금융법에 따른 휴면예금활용은 영세 개인사업자 대상 신용대출사업, 사회적 기업 및 사회적 협동조합 대상 신용대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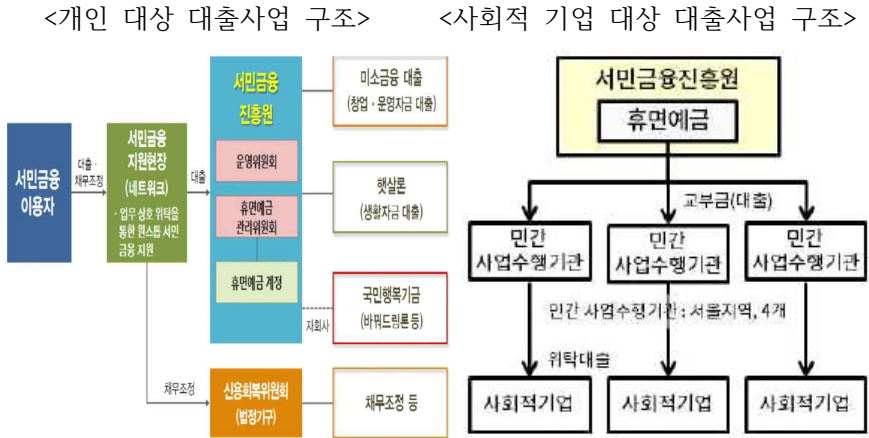
7) 서민금융법에 ‘서민’이라는 용어가 여러 곳에 등장하나 여기에서도 ‘서민’에 대한 정의는 되어 있지 않다. 한편 동법 시행령에서는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으로서 ‘영세한 개인사업자’, ‘사회적 기업’, ‘저소득층 지원’ 등을 제시함으로써 ‘서민’을 영세 및 저소득층 등으로 해석할 수 있다.

8) 서민금융재단 정관 제48조(서민금융생활의 지원)에서 진흥원은 저소득층 지원 및 서민생활의 안정 등을 위해 법 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수행기관을 지원할 수 있다. 1. 저소득층의 창업, 취업, 주거, 의료 및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대출사업, 2.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대출사업, 3. 저소득층의 보험계약 체결 및 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 4. 저소득층의 원활한 금융생활 지원을 위한 종합상담 및 금융상품 등의 소개 사업, 5. 영세개인사업자의 영업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대출사업, 6.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대출사업, 7.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대출사업, 8.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업 및 휴면예금재단법에서 제시된 사업 등의 계승 등으로 사회적 기업 및 사회적 협동조합이 추가되었으나 대부분 저소득층 대상 신용대출사업임에 기존 소액서민금융재단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정관에 따라 주식회사 1주 1표 형태를 취하고 있어(서민금융진흥원 정관, §24) 다양한 사회 구성원 참여에 일정한 제한이 있다. 특히 핵심적 이해관계자인 저소득층, 영세개인사업자 등이 진흥원 주식을 매수하는 일은 일반적이지 않을 것으로 취약계층, 영세개인사업자 등이 실질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된 채 신용대출사업에 집중하고 있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 휴면예금의 원천이 대부분 국민 일반에 있음을 상기하면 이러한 구조의 당위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림 1> 한국의 휴면예금활용 흐름도



출처: 남주하 2016; 기획재정부 2018.

2. 일본의 휴면예금활용

일본의 휴면예금과 관련된 법률규정을 살펴보면, 일본에서는 2016년 ‘민간공익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휴면예금 등에 대한 자금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휴면예금활용법’이라고 한다)이 제정되었다. 일본은 10년

이상 방치된 예금 등이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매년 1,200억 엔 정도 발생하였으나 500억 엔 정도만 환불되어 이러한 휴면예금의 바람직한 활용 방안으로 첫째, 은행 등이 공공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자금, 둘째, 예금보험제도 등에 의한 공적 자금 활용, 셋째, 널리 국민 일반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예금자 등에 대한 환불 노력을 다한 다음에 사회 전체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민간공익활동 촉진에 활용함으로써 휴면예금을 널리 국민 일반에게 환원하는 것으로 휴면예금활용법 제정이 추진된 것이다(金融庁 2018). 휴면예금을 민간공익활동(인구 감소, 고령화 진전 등 사회 경제 정세의 급속한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중앙정부 및 지자체가 대응하기 어려운 사회적 제반 과제 해결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민간단체가 수행하는 공익 기여 활동(① 어린이 및 젊은이 지원, ② 일상생활 등을 영위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에 대한 지원, ③ 지역 활성화 등의 지원이라는 3개 분야에 관한 활동)으로서 이것이 성과를 거둠으로써 국민 일반 이익이 한층 더 증진됨에 이바지하는 것, 이하 ‘민간공익활동’이라고 한다)의 촉진에 활용한다(동법, §16, §17).

민간공익활동의 자립한 주체의 육성 및 민간공익활동에 대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환경 정비를 촉진한다(동법, §16②). 예금자 등 예금 등을 자금으로 하고 있음에 유의하면서 다양한 의견이 적절하게 반영 되도록 배려하는 동시에 그 활용 투명성 확보를 도모한다(동법, §16③). 대도시 기타 특정 지역에 집중되지 않도록 배려한다(동법, §16④). 복수 연도에 걸친 민간공익활동에 대한 조성 등, 사회 제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 수법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성과에 대한 목표에 착목한 조성 등 기타 효과적 방법을 선택함으로써 민간단체 창의와 공리가 충분히 발휘되도록 배려한다(동법, §16⑤). 종교단체, 정치단체, 폭력조직 등은 활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동법, §17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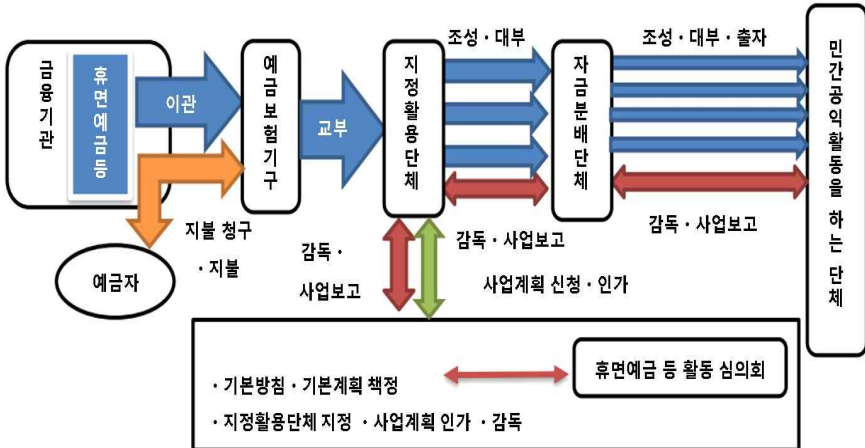
일본의 휴면예금의 운영기관에 관해 살펴보면, 일본에서 ‘휴면예금 등’은 10년 이상 입출금 등 이동(異動)이 없는 예금 등을 말하며(휴면예금활용법, §2⑥), 금융기관은 예금 등의 존재를 예금자 등에게 통지

해 예금자 등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예금 등에 대해 공고를 한 다음, 예금보험기구에 이관한다(동법, §3).

첫째, 금융기관은 휴면예금 등을 예금보조기구에 납부한다. 둘째, 예금보험기구는 사업계획실시에 필요한 금액을 지정활용단체에 교부한다. 셋째, 지정활용단체는 민간공익활동촉진업무 실시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업계획 등에 의거해 자금분배단체를 공모로 선정하고, 조성 또는 대부(당분간은 조성만)를 실시한다. 넷째, 자금분배단체는 민간공익단체를 실시하는 단체를 공모를 통해 선정해 조성 등을 실시한다.

이에 지정활동단체는 자금분배단체에 대한 조성, 대부(당분간은 조성만) 등(민간공익활동 촉진업무)을 실시한다(휴면예금활용법, §21). 민간공익활동 촉진을 목적으로 한 일반재단법인 중에서 1개 단체를 내각총리대신이 지정한다(동법, §20). 행정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단체인 지정활용단체가 주체적으로 추진한다. 민간공익활동단체에 이르기까지 휴면예금의 활동은 크게 3단계로 그릴 수 있다.

<그림 2> 일본의 휴면예금 활용 흐름도



출처: <https://www.fsa.go.jp/policy/kyuminyokin/01gaiyou.pdf>(검색일: 2020/02/20).

일본 정부는 휴면예금활용법 제20조에 따라 2019년 1월 11일에 지정 활용단체로 일본경제단체연합회(이하, '경단련'이라 한다)가 모체인 '일반 재단법인 일본민간공익활동 연계기구'(이하, 'JANPIA'라고 한다)를 선정하였다. '지정활용단체'로 응모한 4개 단체 중, '경단련'이 주체로 안정성이 높다고 평가되었다. 단, 조성을 받는 조건으로 '사회적 임팩트 평가'와 '성과 가시화'가 제시되어 있음으로 인해 대규모 단체가 조성 대상이 되는 한편 견실한 지역활동을 하는 대상이 제외될 수도 있다는 우려와 비판이 제기되었다.⁹⁾ 또한 '성과를 숫자로 표현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다양한 기준이 없지 않으면 제도 외 영역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어 사회적 안전망이 축소될 것'으로 휴면예금제도에 의한 조성을 받기 어려운 시민활동의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¹⁰⁾ 휴면예금활용법에는 5년 후에 재검토한다는 부대결의가 있어(동법 부칙초, §3) 당초 5년간에 내실있는 활용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JANPIA는 2019년도 자금분배단체 공모를 실시하였고 <표 1>처럼 총 24개 단체를 선정하여 총 2,978,836,587엔 조성을 하였다. JANPIA는 일반재단법인으로서 이사회가 업무집행 결정기관 역할을 한다. 또한 자금분배단체도 공익재단법인, 특정비영리활동법인 등으로 취약계층 등 다양한 사회구성원이 의사결정 참여가 가능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

9) <http://www.ourplanet-tv.org/?q=node/2357>(검색일: 2020.2.20).

10) <http://www.ourplanet-tv.org/?q=node/2282>(검색일: 2020.2.20).

<표 1> 2019년도 JANPIA에 의해 선정된 자금분배단체

구 분	사업명	단체명	기간	조성액 (엔)
풀뿌리 활동 지원 사업 전국 불력 채택 사업	의료적 케어 어린이와 가족의 꿈을기부로 응원	공익재단법인 돈을 돌리자 기금	3년	58,886,400
	당사자 모임의 피어(Peer) 서포트 지원 사업	사회복지법인 중앙 공동 모금회	3년	77,073,182
	안심·안전한 지역사회 구축 지원 사업	개생보호법인 일본개생보호협회	3년	115,148,800
	임환자 지원 등 사업	공익재단법인 일본 대암(大鷲) 협회	3년	116,000,000
	어린이 지원 단체 조직기반 강화	공익재단법인 Public Resource 재단	3년	81,686,819
	장애아 등 체험차 해소 사업	공익재단법인 Blue Sea & Green Land 재단	3년	69,715,000
	시민사회 강화활동 지원 사업	인정특정비영리활동법인 미찌포드(みちぽっど)	3년	99,649,500
풀뿌리 활동 지원 사업 지역 불력 채택 사업	사람·도시·활력 조성	일본재단법인 오사카부(大阪府) 지역지원 인권금융공사	3년	76,295,065
	인구감소와 사회포섭형 Corrective Impact 사업	공익재단법인 사가(佐賀) 미래창조기금	3년	111,569,997
	고립상태인 사람에게 유대를 만든다	공익재단법인 신리자본재단	2년	129,250,000
	NPO에 의한 협업·연계구축 사업	일본재단법인 중부권 지역장소 펀드	3년	137,616,380
	지역자원과 지역자원 연계사업	공익재단법인 나가노현(長野県) 미래기금	3년	104,765,400
	중고급 지방 5개 현(縣) 휴면예금 활용 컨소시엄 휴면예금 활용사업	특정비영리활동법인 히로시마(広島) NPO 센터	3년	105,205,480
	홋카이도(北海道) 미래사회 시스템 창조 사업	일반사단법인 홋카이도 종합연구조사회	3년	126,547,924
	오카나와(沖縄)·이도(離島)어린이 파견 기금 사업	공익재단법인 미래 펀드 오카나와	3년	95,689,000
신규 기획 지원 사업 채택 사업	어린이 미래를 위한 협업 촉진 사업	특정비영리활동법인 Eic	3년	246,496,000
	어린이 식당 서포트 기능 설치 사업	일반사단법인 전국 식(食) 지원 활동협력회	3년	119,140,800
	외국 Roots 청소년 미래창조 사업	공익재단법인 일본국제교류센터	3년	247,906,990
소셜 비즈니스 형성 지원 사업 채택 사업	지역 활성화 소셜 비즈니스 성장 지원 사업	일본재단법인 사회변혁추진재단	3년	246,496,100
	지원부 주택건설·인재육성 사업	공익재단법인 Public Resource 재단	3년	244,084,451
재해 지원 사업 채택 사업	질 높은 연속적 재해지역 지원	특정비영리활동법인 Japan Platform	3년	137,227,688
	중핵적 재해지원 네트워크 구축	특정비영리활동법인 전국 재해 불런티어 지원 단체 네트워크	3년	80,809,360
	재해시 요(要)지원자 긴급 지원 사업	사회복지법인 중앙 공동 모금회	3년	14,388,851
	대규모 재해 후 생활 재건 추진 사업	일반사단법인 RCF	3년	137,187,400
합 계				2,978,836,587

출처: JANPIA(www.janpia.or.jp/koubo) 재구성.

* 조성액은 평상시 5,231,777엔, 재해시 14,388,851엔으로 구분해 기재.

3. SDGs 관점에서 한국과 일본의 휴면예금활용 검토

한국과 일본이 휴면예금활용을 하는 유사점과 차이점은 <표 2>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은 모두 휴면예금활용에 관한 관련법을 마련하여 총괄 조직을 설립, 운영하고 있다. 한국은 휴면예금재단법과 서민금융법을, 일본은 휴면예금활용법을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은 휴면예금활용에 있어 많은 부분에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첫째, 휴면예금활용에 대한 총괄조직과 조직적 특성이다. 한국은 총괄조직을 소액서민금융재단과 서민금융진흥원을, 공모방식이 아니라 법에 근거해 직접 설립하였다. 반면에 일본은 일반재단법인인 일본 민간공익활동 연계기구가 중심이 되어 공모를 통해 4개 응모단체로부터 1개 지정활동단체를 선정한 다음, 지정활동단체가 공모를 통해 자금분배단체를 공모하여 선정하고, 지정활동단체가 민간공익활동단체를 선정, 조성하는 등 3단계를 거쳐 조직하는 특징이 있다. 한국의 서민금융진흥원은 1인 1표 주식회사 형태를 취하고 있으므로 핵심적 이해관계자인 취약계층, 영세개인사업자 등이 실질적 의사결정에 참여하거나 그 의사가 반영되는데, 일정 부분 제한이 있다. 반면에 일본의 경우 공익법인, 특정비영리활동법인 등으로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의사가 일정 정도 반영되는 조직적 요건을 갖추고 있다.

둘째, 주요 대상자와 주요 대상사업이다. 한국은 저소득층의 창업, 취업, 주거, 의료 및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대출,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대출, 저소득층의 보험계약 체결 및 유지 지원, 저소득층의 원활한 금융생활지원을 위한 종합상담 및 금융상품 등의 소개, 영세개인사업자의 영업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대출, 사회적 기업 및 사회적 협동조합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대출 등 주로 개인(일부 사회적 기업 및 사회적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한 신용대출 내지 보험계약 체결 및 유지, 종합상담 및 금융상품 등 소개 등을 실시하고 있다. 반면에 일본은 어린이와 젊은이 지원, 일상생활 및 사

희생활 곤란자 지원, 지역사회 활력 저하 등 지원을 하는 민간공익활동 단체를 대상으로 주로 조성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한편, 한국과 일본은 휴면예금활용에 있어 유사점과 차이점을 보이는 만큼이나 상이한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는 높은 대손율, 지원대상자의 도덕적 해이, 활용재원의 한계, 미청구 자산관리에 대한 미정비 등이 지적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휴면예금제도 조성을 받기 어려운 시민활동의 저하 등이 문제시되고 있다.

<표 2> 한국과 일본의 휴면예금 활용 내용

구 분	한 국	일 본
관련법 (년도)	- 휴면예금재단법(2007년) - 서민금융법(2017년)	- 휴면예금활용법(2016년)
총괄조직	- 소액서민금융재단(2007~2015년) - 서민금융진흥원(2016년~현재)	- 일반재단법인 일본 민간공익활동 연계기구(2018년~현재)
주요 대상자	- 저소득층, 금융채무 불이행자, 영세개인사업자,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 등	- 민간공익활동단체
주요 대상사업	- 신용대출, 보험계약 체결 및 유지, 종합상담 및 금융상품 등 소개 등	- 어린이와 젊은이 지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 곤란자 지원, 지역사회 활력 저하 등 지원
조직적 특징	-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에 따라 휴면예금관리 재단을 진흥원으로 이관·관리*	- 지정활동단체가 자금분배단체를 공모를 통해 선정, 조성하고, 자금분배단체가 민간공익활동단체를 선정, 조성
문제점	- 높은 대손율, 지원대상자의 도덕적 해이, 재원 한계, 미청구 자산관리 미정비 등	- 휴면예금제도 조성을 받기 어려운 시민활동의 저하
SDGs 관점	① 주지회사 1주 1표 형태로 다양한 사회구성원 참여에 제한, ② 핵심 이해관계자인 저소득층의 주주로서의 참여 어려움 개선성 ③ 위와 같은 구조로 신용대출에 집중하고 있는 당위성 문제	① 지정활동단체 JANPIA는 일반재단법인으로서 이사회가 업무집행 결정기관 ② 자금분배단체도 공익재단법인, 특정비영리활동법인 등으로 ③ 취약계층 의사결정 참여 가능

* 휴면예금관리재단이 휴면예금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 및 운용 등 수행을 주요 수단으로 제시하고 있었음에 비해 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의 금융생활과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지원함을 주요 수단으로 하고 있음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이순호·이재연 2017, 83).

그렇지만 한국과 일본에 있어 휴면예금활동은 SDGs 관점에서 확연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는 지원을 받는 주식회사가 1주 1표 형태로 되어 있어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으며, 핵심 이해관계자인 저소득층이 주주로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신용대출에 집중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휴면예금활용을 담당하는 지정활동단체 JANPIA가 일반 재단법인으로 이사회가 업무집행을 결정하는 구조로 자금분배단체도 공익재단법인, 특정비영리활동법인 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휴면예금활동에 있어 취약계층의 의사결정 참여가 비교적 가능한 구조이다. 결국 휴면예금활용에 있어서 한국은 핵심이해당사자인 취약계층의 정책결정참여가 보장되지 않는 반면에 일본은 취약계층의 정책결정참여가 상대적으로 기대될 수 있다.

그렇다면, SDGs 관점에서 한국의 휴면예금활용은 다음과 같은 논의가 제기될 수 있다.

첫째, 휴면예금활용 대상에 대한 유형 확대 논의이다. 현재 휴면예금활용의 초점은 주로 개인(저소득층, 금융채무 불이행자, 영세개인사업자 등) 또는 사회적 기업 및 사회적 협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한 신용대출에 있고 그 배경으로 제도화 당시 IMF와 신용카드 사태 등의 상황이 감안되지만 현재 상황에서도 더군다나 도덕적 해이가 지속적으로 우려되고 왔음에도 개인 위주 신용대출로 이어 갈 것인지 아니면 일부 조성금이나 기금 형태로 공익적 민간단체에 자금이 환원되는 구조를 추가적으로 검토할 것인지에 대해 영국이나 일본 사례에서 시사되는 바가 있다. 나아가 1주 1표제로 핵심적 이해관계자인 저소득층, 금융채무 불이행자, 영세개인사업자 등이 실질적 의사결정 구조에서 배제되어 있는 구조에서 현행 휴면예금 활용 방식이 바람직한지, 의사결정 구조의 질적 변화가 논의될 여지가 없지 않다.

둘째, 운영기관 선정과 분배 방식의 다양화가 요구될 수 있다. 개인 위주에서 단체를 포함한 대상의 질적 확대에 관련한 것으로 만약 휴면

예금의 활용 대상을 사회적 기업을 비롯한 사회적 경제 관련 단체까지 확대할 방향에 있어서는 운영기관 선정과 분배 방식 등을 관련 기관(사회적 기업 진흥원, 도시재생 지원기관, 커뮤니티 케어 등등)과의 관계성이 그 내실에 영향을 줄 것이다.

셋째, 휴면예금활용에 대한 인식 논의이다. 1주 1표제인 현행 서민금융진흥원 의사결정 구조에서 국민 일반의 휴면예금 활용에 대한 관심 제고에는 일정한 제한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고 주식회사 형태를 부정하는 논리가 아니지만, 현재 휴면예금에 대한 관심이 돈을 찾는 일에 비교적 집중되어 있다면, 결국 주인을 찾지 못한 돈을 어떻게 국민 일반에게 보다 효과적인 형태로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추가적 논의가 제기될 수 있다.

IV. 결론

본 연구는 한국 휴면예금 활용이 저소득층 개인 신용대출 위주로 설계, 운영되고 있음에 비해 영국, 일본 등은 공익활동 민간단체 조성금, 기금 등 위주로 설계, 운영되고 있음에 주목해 그 차이에 대해 SDGs 관점을 참조하면서 비교 분석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비교분석 결과, 우선 휴면예금 활용에 대한 다음과 같은 한국의 특징이 부각되었다.

첫째, 한국에서는 1998년 외환위기와 2002년 신용카드 사태 가운데 신용불량자가 급증해 정부는 신용불량자 신용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휴면예금을 저소득층 지원 및 신용불량자의 경제적 회생을 위해 활용하기로 하였다는 배경이 있었다.

둘째, 한국에서는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를 지원하는 다양한 체계, 예컨대 사회적 기업 육성법, 협동조합 기본법, 마을기업, 자활기업, 시니어클럽, 도시재생사업, 커뮤니티 케어 등등이 있어 정부기금의 성격 및 비효율적 운용을 지양하고자 하였던 이유를 거론할 수 있다.

셋째, 서민금융진흥원이 갖춘 1주 1표라는 주식회사 의사결정 구조에

의해 핵심적 이해관계자인 저소득층, 영세 개인사업자 나아가 일반 국민의 실질적 의사결정구조 참여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휴면예금활용에 대한 방안 논의가 영리추구 주주의 의사에 치중하게 되는 구조가 있다.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SDGs 및 일본의 사례를 통해 얻어진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휴면예금활용 대상에 대한 유형에 대해, 현재 휴면예금활용은 주로 개인(저소득층, 금융채무 불이행자, 영세개인사업자 등) 또는 사회적 기업 및 사회적 협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한 신용대출에 있지만 그 대상 확대 추가적 검토에 관한 것이다.

둘째, 운영기관 선정과 분배 방식에 대해, 휴면예금의 일부를 단체 대상 조성금이나 기금으로 구상할 의의에 관한 논의이다.¹¹⁾

셋째, 휴면예금 활용에 대한 인식 제고에 관한 것으로, 국민 일반의 자산을 원천으로 하는 휴면예금을 어떻게 하면 국민 일반에게 더욱 효과적인 형태로 활용하고 환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속적 검토가 기대되고 있음이 시사된다.

끝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일본의 휴면예금활용이 2019년에 시작된 관계 상 실제 활용 사례 특히 성공과 실패 사례 등을 조사할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일본보다 약 10년 앞서 휴면예금활용을 시작한 한국의 그간 성과를 재분석하고 이에 기초한 활용 방향성 문제와 개선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후속 연구 또한 필요하다.

11) 관계부처 합동 자료(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2018)에서 제시된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에서도 휴면예금 활성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사회적 기업에 대한 대출이라는 기저에는 변화가 없다. 한편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이후 동법을 근거로 설립된 협동조합에서 다양한 과제가 제기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기본법 협동조합에 대한 휴면예금 활용 가능성을 검토할 수도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기획재정부. 2018.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자료』.

남주하. 2016. “사적 채무조정제도의 국내외 현황과 발전방안.” 『한국경제학회 발표자료』.

네모토 마사쓰구. 2014. “재난 피해지역 사회적 경제조직의 역할과 온라인 기부 시스템: 동일본 대지진 피해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제14권 6호, 119-128.

백경순. 2012. “저소득층 자립지원을 위한 국내외 마이크로크레딧 제도 비교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순호·이재연. 2017. “금융권 미청구자산 관리제도의 개선방안.” 『금융리포트』 2017년 3월호.

이재연. 2005. “휴면예금 처리 방안.” 『주간 금융 브리프』 제14권 31호, 14-17.

이정문. 2019. “사회적 금융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연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정찬우. 2007. “휴면예금관리재단 운영의 기본방향.” 『주간 금융 브리프』 제16권 49호, 14-15.

조은목. 2014. “서민금융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미소금융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Commission on Dormant Assets. 2017. Tackling Dormant Assets: Recommendations to Benefit Investors and Society. Department for Culture Media & Sport.

湯淺誠. 2019. “子どもの貧困 私たちにできること.” 『自治権いばらき』 제132권, 1-33.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0522호, 2011. 3. 31. 타

208 한국과 국제사회 제4권 2호 (2020)

법개정).

휴면예금 이체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8573호, 2007. 8. 3. 제정).

사회적기업 육성법(법률 제11275호, 2012. 2. 1. 일부개정).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4095호, 2016. 3. 22. 제정).

서민금융진흥원 정관(2016.9.23., 제정).

民間公益活動を促進するための休眠預金等に係る資金の活用に関する法律(法律 第95号, 2018.12.14. 改正).

서민금융진흥원(<https://www.kinfa.or.kr>).

JANPIA(www.janpia.or.jp/koubo).

<https://www.fsa.go.jp/policy/kyuminyokin/01gaiyou.pdf>(검색일: 2020/2/20).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1011_0000440210&ciD=10401&pID=10400(검색일: 2020/2/20).

<http://www.ourplanet-tv.org/?q=node/2282>(검색일: 2020/02/20).

<http://www.ourplanet-tv.org/?q=node/2357>(검색일: 2020/02/20).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dormant-assets-commission-report-to-government>(검색일: 2020/02/20).

투고일 : 2020년 2월 27일 . 심사일 : 2020년 3월 17일 . 게재확정일 : 2020년 3월 27일

* 네모토 마사쓰구(根本 眞嗣) 충북대학교에서 2009년에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현재 충북대학교 국제개발연구소에서 사회적경제, ODA, 지적재산 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 정태일은 충북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충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저서로는 『고대정치사상연구』와 『중세서양정치사상연구』 등이, 논문으로는 “한국에서 지역주의의 정치적 효과”와 “제6공화국의 대통령선거에 대한 고찰” 등이 있다.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the Scope of the Use of Dormant Deposits between Korea and Japan : Focusing on the SDGs Perspective

Nemoto, Masatsugu · Chung, Tae-Il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Korea has faced the task of economic recovery of creditors due to the IMF economic crisis and credit card crisis. This situation occurred that new system of using dormant deposits was introduced in 2007, ten years before Japan in 2016. This study intends to compare and analyze the system of using dormant deposits in Korea and Japan from perspective of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In Korea, dormant deposits are mainly utilized to credit loans for low-income individuals, while Japan is focused on supporting private public interest organizations which engaged in public interest activities for local residents, including vulnerable groups. From the viewpoint of SDGs, which emphasize the vulnerabilities are not only due to economic problem, but also due to social problems, it means a lot to Korea, which is using dormant deposits mainly to credit loans for low-income individuals, partially for social enterprise and cooperative which provides social support.

Keywords : Dormant Deposit,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Lower-Income Class, Social Support, Social Enterprise